



용수절감이 에너지 합리화자금

**독자 여러분의 엽서
나
메일을 받습니다.**

ESCO지가 독자 여러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ESCO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하실 사항, 잡지를 읽어보신 소감 등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특히 ESCO협회의 홈페이지(www.esco.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더욱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문래에이스테크노타워 702호
esco 편집자 앞
TEL : (02)2679-6464
FAX : (02)2632-7566
w3master@energycenter.co.kr

HID용 전자식안정기 개발업체입니다.

2005년 전자식 안정기를 개발, 안전인증(250W, 400W)을 받아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관련 기관에서는 정부공인기관의 검사시험성적서를 요구합니다. 그것도 저희회사 제품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기식안정기 제품과의 비교시험 데이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어떤 정부공인 검사시험기관이 있는지, 타사 제품과의 비교시험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비교시험이 불가능하다면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비교시험자료를 어떤방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HID용 안정기중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은 나트륨램프용 안정기와 메탈램프용 안정기이므로 이 두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공인 검사 시험기

관은 고효율기자재인증을 위해 시험성적을 받는 정부 공인 기관으로 산업기술시험원(www.ktl.re.kr), 에너지기술연구원(www.kier.re.kr), 전기전자 시험연구원(www.keeti.re.kr), 전기연구원(www.keeri.re.kr), 조명기술연구소(www.klit.re.kr), 전자파연구원 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용으로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하여 검사시험성적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교시험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똑같은 시험방법으로 같은 성능에 대해 시험하였을 경우 서로의 시험 성능치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고효율기자재인증을 위한 시험기준으로 위에 언급한 공인기관의 성적서로 서로의 성능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타 업체가 인증을 획득하기위해 받은 성적의 전부를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 효율실 홈페이지의 인증제품의 목록을 보면 제품의 용량과 효율값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로 일차적으로 제품에 대해 비교 검토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비교 검토는 인증 받은 업체에 동의를 구하거나, 검사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각종 기관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니라 당연한 국제적으로 민감한 탄소 배출권 획득 및 거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사항을 꼭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토메카니즘에 의하면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ET(배출권거래), 둘째가 JI(공동이행제도), 세째가 CDM(청정개발체제)로의 구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모든 나라(156개국)는 각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이 현재 정해져 있는지? 그렇다면 감축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청정지역의 국가들(몽고, 네팔 등등)은 배출한도가 넘게 되는데, 그 넘은 배출량을 임의로 타 국가에 거래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들(부속서 1국가)만이 이 배출권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 개도국들도 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한지?

신청조건 인지?



2. 다국적 기업이나 일개 기업이 어느 한 국가의 배출권총량에 대해서 그 국가의 협조를 얻어 그 총 배출권의 권리를 양도를 받게 되어서 임의로 그 국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배출권을 타국가나 기업들에게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안된다면 CDM방식이나 다른 메카니즘으로 판매대행을 그 위임받은 자가 대신할 수 있는지?

3. CDM방식으로 배출권확보를 시도할 때, 최종 CERs를 받게 되는 기간이 보통 3년에서 7년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4. 우리나라에서 타 개발도상국으로의 CDM방식의 프로젝트에서 획득되는 배출권의 경우, 우리나라도 개도국이므로, 최종 CERs가 우리나라의 기업 계좌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

1. 현재 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감축의무를 받은 국가는 교토의정서상에 언급되어 있는 38개 국가들입니다. 2008년부터 예정인 국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 대상국 기일 것, 2)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감축의무 대상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감축의무를 받은 국가가 그 배출권을 기업에게 할당한다면 해당기업은 다

른 국가의 기업들과 배출권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 이행내용을 다룬 'Marrakesh Accords' 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legal entity'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CER의 발행은 매년 시행되는 감축량의 검증과정을 통해 발행됩니다. 최종 발행을 언급하신 것은 baseline의 주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baseline은 7년을 기준으로 2번 갱신이 가능하고, 아니면 10년을 단일기간으로 해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4. CDM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개도국에 가서 CDM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사항이 에너지 합리화자금 신청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정에서 대기중으로 Vent 되는 Visible 스팀은 일반적으로 가시스팀이라고 불리는 배출 '백연' 이지만 함유율이 있어서 상당량의 물을 함유하여 대기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의 온도가 약 80°C로 이를 냉각하면 배기배출가스중의 물을 회수 가능하여 이 물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냉각시키는 Source는 일반적인 공장에서 사용하는 냉각탑 헨(fan) 상부에 냉각기(Fin Cooler)를 설치하므로 추가적인 냉각 Source는 없습니다만, 대기배출되는 백연

중의 물을 냉각 응축 회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회수는 전력과 연료 및 스팀이 아닌 단순한 물로서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을 외부에서 구입사용함으로 내부적인 변동비 절감은 됩니다. 즉 사업장 측면에서는 사용중인 동력의 일부인 물을 절감하는 것으로 투자되는 항목이지만 이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에너지합리화 자금활용부문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VA에 가입된 사업장이며 계획서에는 없으나 가능하다면 VA 계획변경을 먼저하고 합리화자금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년에 활용(인터넷신청) 경험이 있어서 방법의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작년에 VA자금을 활용해 보셔서 절차는 모두 알고 계시는 듯하나 용수절감이 자금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물어보셨는데 단순히 용수절약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알고 계시다시피 연료 및 전기절약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용수절감을 통해 연료 및 전기 절약이 가능하다면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나 변동비 절감 차원의 용수절감은 지원대상으로 곤란합니다.